

## 해양교육센터 지정서 지역해양교육센터

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|
| 지정번호                | 제 호 |      |  |
| 기관(단체)명             |     | 지정유형 |  |
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|     |      |  |
| 대표자(성명)             |     |      |  |
| 주소<br>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 |     |      |  |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·제9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(단체)을 해양교육센터  
·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### 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나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
  - 다.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  - 라.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
-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